

2025 지역 특화 소재 활용 융복합 교육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지역 특화 소재 활용 융복합 교육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4. 14.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지역 특화 소재 활용 융복합 교육 콘텐츠 제작지원
- 사업목적: 전북 소재 활용 융복합 교육 콘텐츠 발굴 및 기업지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5. 11. 30.
- 제작내용

구분		지역상생형		체험교육형
1	제작목적	기존 지역문화와 전통을 소재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소재 활용 콘텐츠 분야 진로·직업 탐색을 위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
2	교육분야	지역문화, 역사, 인물, 축제 등 지역에 관한 내용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3	제작형태	실감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출판, 영상, 애니메이션 등(제한없음) * 게임제외		
4	지원규모	3개 과제(최대 70백만원)		2개 과제(최대 35백만원)
5	지원내용	콘텐츠 제작 직접비 지원(인건비, 용역비 등)		
6	지원조건	상 용 화	협약기간 내 콘텐츠 제작완료, '25년 12월 이내 상용화 추진	진흥원 진로직업 체험교육 시 활용(시범운영)
		신규고용	과제당 1명 이상 신규고용 必	-
		자부담금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현금) 편성 의무	

* 지역특화소재: 전북이 보유한 고유한 역사·문화적 자산, 자연생태, 전통기술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독창적 가치를 지닌 소재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체성 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

2 지원내용

구분		지역상생형 및 체험교육형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에 해당하는 기업																					
		자체 융복합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도내기업] - 도내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 기업(본사) - 도내기업 지사는 지원 불가	[도외기업] - 도외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 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지원 업종	- 사업자등록증상 지원분야에 적합한 업태(종목)가 등록된 콘텐츠 기업																					
		<table><tr><td colspan="4"><콘텐츠 산업분야></td></tr><tr><td>캐릭터</td><td>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스업 등</td><td>영상</td><td>영상 기획 및 제작 등</td></tr><tr><td>만화</td><td>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등</td><td>지식정보</td><td>e-러닝업, 에듀테인먼트 제작 등</td></tr><tr><td>애니메이션</td><td>애니메이션 창작·제작업 등</td><td>콘텐츠솔루션</td><td>저작물, 모바일솔루션, CG 등</td></tr><tr><td>실감콘텐츠</td><td colspan="3">MRVR 홀로그래픽 등</td></tr></table> ※ 상기 분야 이외의 경우 사전문의 후 신청(게임 및 단순 예술 및 창작 분야 지원 불가)				<콘텐츠 산업분야>				캐릭터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스업 등	영상	영상 기획 및 제작 등	만화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등	지식정보	e-러닝업, 에듀테인먼트 제작 등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창작·제작업 등	콘텐츠솔루션	저작물, 모바일솔루션, CG 등	실감콘텐츠	MRVR 홀로그래픽 등
<콘텐츠 산업분야>																							
캐릭터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스업 등	영상	영상 기획 및 제작 등																				
만화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등	지식정보	e-러닝업, 에듀테인먼트 제작 등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창작·제작업 등	콘텐츠솔루션	저작물, 모바일솔루션, CG 등																				
실감콘텐츠	MRVR 홀로그래픽 등																						
공통	-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40조제1항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본 사업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신기술 활용 지역 현안 해결 콘텐츠 개발 제작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 시 1개의 과제만 운영할 수 있음(단, 체험교육형 과제는 해당사항 없음) - IP(지식재산권) 사용시 사용계약서 등 관련 증빙 제출, 지원사업비 내 자사 IP사용료 편성 불가 컨소시엄 불가(용역비로 편성 가능)																						
지원 조건	개발 기간	- 협약기간(협약일 ~ 2025. 11. 30.) 내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며 상용화 필수																					
	자부 담금	- 과제별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90% 미만으로 지원하고, 자부담금(10% 이상)을 우선 집행하여야함. ※ 총사업비(100%) = 지원금(90% 미만) + 자부담금(10% 이상) · 지원금 70,000,000원(90%)×자기부담금 7,780,000원(10%) = 총 사업비 77,780,000원 - 지자체 보조금(지방비)은 자부담으로 편성 불가 ※ 자부담금 비율은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음																					
	고용 창출	신규인력 1명 이상의 고용 必(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역상생형만 해당																					
	보증 보험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행																					
<진흥원 지원 제한사항>																							
-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우리원에서 5천만원 이상(공고금액 기준)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 · 당해년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우리원에서 1.5억원 이상(공고금액 기준)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 향후 1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우리원에서 2년간 수혜 받은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원(공고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 향후 2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상기 제한사항 외에도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추진절차 및 일정

구분	내용	시기
사업광고/접수	- 사업 모집공고 (사전 서류 및 적합성 검토)	4. 14.(월) ~ 5. 9.(금)
▼		
서류평가	- 서류평가 * 모집 수에 따라 평가일정 및 방식 변경가능	5. 13.(화)
▼		
선정평가	- 발표평가 - 선정기업 예산적정성 검토 및 예산확정 * 모집 수에 따라 평가일정 및 방식 변경가능	5. 20.(화)
▼		
현장점검	- 선정기업 소재지 실태점검 등	5월 중
▼		
협약체결	- 과제협약 및 1차 지원금 교부	6. 2.(월)
▼		
중간평가	- 과제 수행 추진율 중간점검 (현장점검 동반) - 평가결과에 따른 2차 지원금 교부	9월 중
▼		
결과평가	- 콘텐츠 결과물 시연 등 최종평가	12월 초
▼		
사업정산	- 정산/실적 및 회계검토보고서 제출 - 정산잔액 및 이자 반납	12월 중

※ 상기 절차는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

[용어설명]

- 총사업비: 지원금과 자기부담금(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
- 지원금: 사업비 중 진흥원이 기업에 지급하는 금액
- 자기부담금: 사업비 중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총 사업비의 10% 이상)

- 관련규정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함
- 콘텐츠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수행기업(주관기업)에게 있음

- 사업비 사용 및 관리

-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 및 예산심의에 따라 조정·삭감될 수 있음
- 사업비(지원금+자기부담금)는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에 의거 집행되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대표자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함
- 수행기관은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별도의 신규계정(계좌)을 개설해 관리하여야 함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계좌를 활용할 경우 통장 잔고 '0원' 인 상태에서 운용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과제 사업비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지원금 분할지급(최초 70% 교부 이후 사업비 지급 상황에 따라 추가교부)

- 자기부담금 편성 및 집행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을 필수 편성해야하며,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함
- ※ (예시) 총 사업비 및 자기부담금 10% 이상 계산
- 지원금 70,000,000원(90%)×자기부담금 7,780,000원(10%) = 총 사업비 77,780,000원
- 2차 지원금 교부 전 사업비에 편성한 자기부담금 미소진 시 2차 교부금 지급 불가
- 자산취득비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 일반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협약 이전 또는 이후에 필요할 경우 수행기관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종료 이후 2년간 과제관리·점검 등 사후 성과관리가 진행됨
- 사업비 집행 시 가족,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 시 환수함
- 참여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함
- 진흥원 제작지원사업 선정 기업 간 거래 불가
- ※ 정부출연사업 등 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하는 경우
- ※ 이중취업(타 업체 대표 이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참여인력이 통상적으로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따라 사업운영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모든 결과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지원 문구 삽입 권장
-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원 진행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신기술 활용 지역 현안 해결 콘텐츠 개발 제작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 시 1개의 과제만 운영할 수 있음(단, 체험교육형 과제는 해당사항 없음)

4 신청안내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5. 4. 14.(월) ~ 5. 9.(금)
- 접수기간: 2025. 5. 2.(금) ~ 5. 9.(금) 16:00까지 * 마감시간 엄수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오프라인 불가)

-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 접수

* 접수확인 후 접수증 회신예정, 회신이 없을 경우 2일 이내 접수확인요청

** 마감일 접수의 경우 접수확인 전화문의 요망

○ 사업문의: 로컬사업팀(063-282-2460, keh0901@jcon.or.kr)

○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 유의사항	제출 방식
과제 신청서	①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안내문 참조	PDF
	②	참여인력 이력		
	③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④	신규인력 채용계획		
동의서	⑤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안내문 참조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자필서명 필수	
	⑦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안내문 참조	
필수 제출 서류	⑧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⑨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제출일 기준 발행 1개월 미만의 것	
	⑩	표준재무제표	- 홈택스 발급 · 3개년(22~24년도) 표준재무제표 · 표준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단, 법정 결산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기타 서류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미제출 시 평가지표에 따라 기본점수 적용	
	-	기타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가산점 증빙서류, IP사용 시 사용계약서 등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상기 제출서류 이외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시 최종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서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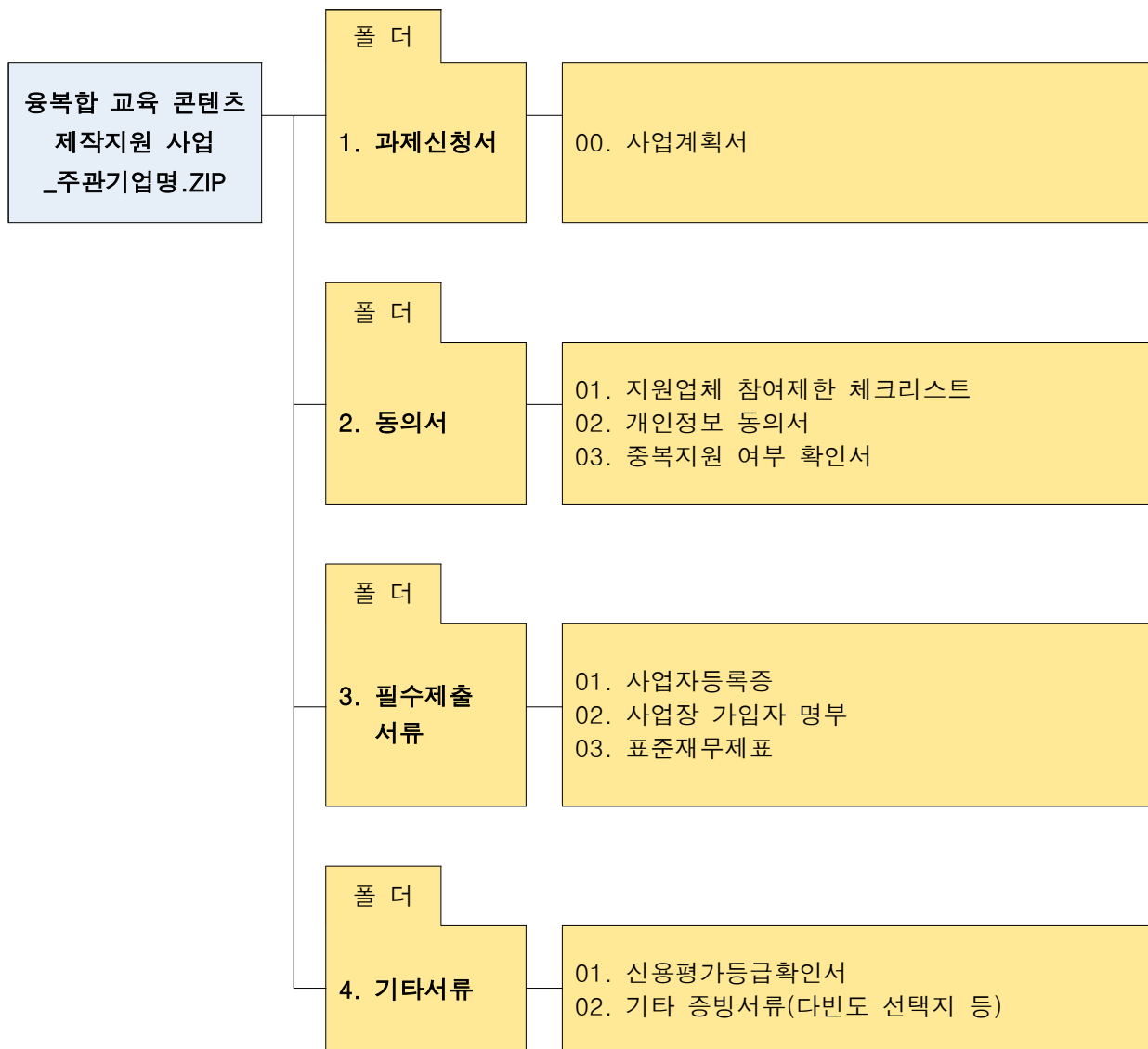
※ 서류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첨부된 사업 안내문 참조

○ 서류제출방법

- 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하여야 함
- ※ 압축파일은 50MB 이하의 용량으로 압축하여 업로드
-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 누락 및 오제출된 서류는 보완·수정이 불가
- 압축파일명: **융복합 교육 콘텐츠 제작지원사업_주관기업명.ZIP**

· 압축폴더트리



5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과제적합성 검토 (사업담당자)		선정평가 및 예산심의 (외부평가위원회)		협약체결
○ 제재사항 적/부적합 여부 ○ 구비서류 적/부적합 여부 ○ 중복지원 대상자 여부	⇒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예산심의 ○ 지원금 최종 확정	⇒	○ 현장점검 ○ 협약서 등 서류제출 ○ 1차 지원금 교부

- ※ 신청 과제 수가 본 사업 지원규모(5개)보다 적거나 같을 시, 재공고 가능
- ※ 신청 과제 수가 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10개 과제 이내)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 ※ 선정(발표)평가는 **별도 발표자료 없이 제출한 과제신청서 기준으로 발표 및 평가**
- ※ 선정(발표)평가 발표자는 주관기업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에 한함

○ 사업평가(안)

구분	평가사항	평가결과
① 서류평가	사전 적합성 검토 진행 후 서류평가	모집단위의 2배수 선발
② 발표평가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 예산심의	사업비 확정 및 현장점검 기업 대상 선정
③ 현장점검	사업장 유무, 근무환경, 참여인력 등	최종 선정기업 협약체결
④ 중간평가	수행과제별 진척률 점검	2차 지원금 교부
⑤ 결과평가	과제 최종 수행점검(시연 등)	사업정산

- 심사위원 구성: 산·학·연·관 전문가 7명 내외 구성

○ 평가기준(안) ※ 평가지표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적합성 검토

구분	검토사항	평가
① 제재사항	- 진흥원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별표 참조)	☐ 적합 ☐ 부적합
② 구비서류	- 과제신청서 및 필수제출서류	☐ 적합 ☐ 부적합
③ 중복지원	- 중복지원 대상자 여부	☐ 적합 ☐ 부적합

- 서류평가 평가지표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전반적인 과제 내용 평가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정량·정성)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총합의 산술평균 점수에 가점 및 감점 적용하여 평가점수 산출
- 평가결과 70점 이상 과제 '적합', 70점 미만 과제 '부적합' 판정
- '적합'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대면평가

(모집규모 2배수 / 10개 과제 내외 선정)

구분	세부항목	검토사항	배점
수행기관(20)	수행관리체계	-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20
	기업전문성	- 콘텐츠 제작 전문성 확보 및 참여인력 과제 수행가능 여부	
사업비(20)	사업비 규모	-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20
	사업비 조달계획	-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과제기획력(30)	과제이해도	- 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30
	기획독창성	-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	
	기획완성도	- 기획안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 여부	
과제내용(30)	경쟁력	- 시장의 타 콘텐츠와 경쟁하여 우위에 있는 정도	30
	교육성	- 교육내용이 제작목적에 관련성 있고 유익한지 평가	
	상용화 구체성	- 세부적인 상용화 계획(플랫폼 활용 등)	
합 계			100

- 발표평가 평가지표

- 별도 발표자료 제출 없이 제출서류를 통한 발표평가
- 과제별 20분(발표 10분/질의응답 10분) 평가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총합의 산술 평균 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결과 70점 이상 과제 '적합', 70점 미만 과제 '부적합' 판정
- 최종 선정과제는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량 평가 (5)	재무안정성 (5)		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5
			신용 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정성 평가 (95)	수행 기관 (30)	기업 전문성	- 콘텐츠 관련 기술 보유 등 기업 전문성 확보 여부					30
		기업 역량	- 유사 과제 수행 및 시장 성공 경험					
		추진 의지	-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 각오					
	과제 내용 (40)	기획 우수성	- 융복합 콘텐츠로서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독창성					40
		기획 완성도	-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완성 수준					
		과제 경쟁력	- 시장의 타 콘텐츠와 경쟁하여 우위에 있는 정도					
	기대 성과 (25)	사업화	-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 및 2차 콘텐츠 발전 가능성					25
		투자 가능성	- 기대되는 매출규모 및 투자유치 가능성					
		경제적 성과	- 상용화 계획을 통해 기대되는 콘텐츠의 교육효과, 소비·향유 정도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제40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제재조치(처리기준)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 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 단체의 임직원 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 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 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지원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제40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제재조치(처리기준)
8. 제4조 제3항의 민간단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5천만 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 나. 1.5억 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다. 2년간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9.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사. 지원사업을 수행한 민간단체가 해당 과제에 대한 행정적 시정 및 권고, 지적의 조치 등의를 받거나, 사후 관리가 극히 불량인 경우 아. 그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가.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나. 향후 1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다. 향후 2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다.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마. 기술료 해당액 환수 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사. 향후 5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아.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 환수